

# 군서미래국제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2021.4.13.  
개정 2021.9. 8.  
개정 2023.4.14.  
개정 2023.12.14.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군서미래국제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30조, 제31조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 제4조 【책무】

-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및 권리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표현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선도 처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⑦ 학생은 본인에 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⑧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으로부터 안전】**

-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는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 【사생활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교직원)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선도 처분 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7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 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빈곤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한다.

**제21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 【선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선도는 선도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선도와 그 전후의 절차에 선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선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학생의 참정권 보장】

①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 【학생의 노동권 보장】

① 학생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노동인권교육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장 학생 생활

### 제1절 교내 생활

**제30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생들은 교내 시설물에 대해 낙서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을 잘 한다.

**제3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3조 【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4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고 성평등의식을 갖는다.

- ① 남·여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성평등의식을 가지며,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여 학생 단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5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특별(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특별(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② 인가된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등록·신청을 한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 시(포트폴리오데이,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전문가나 학부모 협조 가능)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에 참여 시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 및 학생인권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인권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업무담당부서 확인 후 게시)
- ⑦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자 할 때
- ⑧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37조 【교복 및 용의복장】**

- ① 재학생은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복을 착용한다.
- ② 군서미래국제학교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모두 학교가 가진다.
- ③ 교복의 안감에 특정 표식 및 문양 등은 교복 브랜드와 관계없이 동일하도록 규정한다.
- ④ ‘학교 주관 구매’ 계획에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을 반드시 반영한다.

- ⑤ 교복 구매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친다.
- ⑥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⑦ ‘학교주관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고지서를 발부하고 학교 행정실에 수납한다.
- ⑧ 교복 규격 및 디자인은 학생·학부모·교원의 합의를 통해 구성한다.
- ⑨ 학생들은 올바르게 교복을 착용해야 하며,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⑩ 교복을 훼손하여 입거나 본래의 모양과 다르게 고쳐 입지 않도록 한다.
- ⑪ 학생·학부모·교원의 합의를 통해 생활복(활동하기 편한 단체복)을 마련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⑫ 학생은 두발, 화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소지품 및 용의복장 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7항에 의거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학교폭력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와 관련된 사안)를 학교장 명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 ②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학교장 보고 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 결재를 득하며, 소지품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 ③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주의 조치 및 지도를 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소지하지 못하게 협조를 구한다.
- ④ 적발된 소지품은 담임교사가 보관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 또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용의복장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시정협조를 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제2절 교외생활

**제39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관리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및 동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40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행동

### 제3절 정보통신

**제41조 【사이버 생활】** 예의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42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 휴대전화의 사용은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공강 시간을 제외한 수업 중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수업 중 컴퓨터·통신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 제4절 학생생활지도

**제43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한다.

**제44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② 진학과 취업에 대한 명확한 진로를 세우도록 한다.
- ③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을 이용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 ④ 학기 중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지도를 모색한다.
- ⑤ 직업윤리의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제45조 【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6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47조 【포상의 시기 및 방법】** 학생 포상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소년의 달(5월)과 학생의 날(11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한 모범학생은 전 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표창한다.
- ② 분야별 구분 없이 학기별 재적 인원의 20% 이내로 추천하되 중복될 경우 창의인성부장과 각 급별 담당 부장이 협의하여 택1 할 수 있다.

**제48조 【포상의 종류】** 학생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선행상 : 품행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
- ② 모범상 :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49조 【결격 사유】** 학교생활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표창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반성의 기미가 확실하고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학생은 심의를 통해 포상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5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선도와 관련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장 :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장이 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간사 :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되고 회의를 진행한다.
  4. 위원 : 학년운영부장, 진로 교사, 상담 교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선도대상 학생의 학부모 및 학생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소집은 업무담당부장의 제청에 의하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1조 【학생의 원칙】** 학생선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 조치 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생선도 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 처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 ⑤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 ⑥ 학생선도는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전체의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2조 【선도 처분의 종류】** 선도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3시간-10시간)(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 ②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 ③ 특별교육이수(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⑤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만 적용한다.)

- ⑥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⑧ 제49조 선도 처분이 내려진 학생은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병과 조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찰중심 활동	가.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 교환일기, 편지 쓰기 등 나. 잠시 마음 다스리기 : 떠들거나 장난이 심할 때, 감정 자제가 필요할 때 등 다. 웹 기반 교실 활용하기 : 문제행동에 대한 나의 행동 되돌아보기 등 라. 침묵 수행하기 :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 행동 되돌아보기 등 마. 학교 폭력 예방 UCC 만들기 및 역할극 공연하기
2.	과제중심 활동	가. 암송하며 생각하기 : 시 쓰기, 느낀 점 쓰기 등 나. 독후감 쓰기 : 줄거리 쓰기, 갈등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등 다. 감상문 쓰기 : 영상 시청 후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등 라. 자기 주도 학습하기 :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등 마.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 규칙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로의 권리 존중하기 등 바. 과제 수행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 나의 흔적 앨범/역사 연표, 내 인생의 10대 뉴스 등 사. 브레인스토밍 / 브레인 라이팅 : 신체 기관과 인권 연결하기, 인권 밥상 차리기 등
3.	참여중심 활동	가. 교육활동 도우미 : 교사업무 도우미 활동, 도서 정비 활동 등 나. 웰빙 도우미 활동 : 봉사활동 하고 웰빙 도우미 일지 작성 등 다. 캠페인 활동 :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캠페인 활동 등 라.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 복지 시설과 연계한 나눔과 참여 등
4.	상담중심 활동	가. 상담 프로그램 : 개인·집단 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선생님들 순례 등 나. Wee 센터 활용하기 다. 미술 치료 프로그램 : 감정다루기, 현재의 나 알기, 교육용 포스터 및 표어 만들기 등 라. 연극 치료 프로그램 : 또래상담, 심리극, 즉흥극, 상황극, 극 만들기 등 마. 음악 치료 프로그램 : 심신 치료 음악듣기 등 바. 부모 일터 체험하기 :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 일터 체험 후 소감문 작성 등 사. 사제동행하기 :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등

⑦ 기타 선도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3조 【선도 처분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도 처분 대상으로 한다.

구 분	항	내 용	학생 선도 기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가. 근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인정결석.미인정지각.미인정조퇴.미인정결과</li> <li>○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지도함</li> </ul>					
	(2)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미인정결석 일수가 10일에 도달한 경우	○				
	(3)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미인정결석 일수가 16일에 도달한 경우		○			

	(4)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b>미인정결석</b> 일수가 21일에 도달한 경우			○			
	(5)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b>미인정결석</b> 일수가 26일에 도달한 경우				○		
<b>나. 약물</b>	(1)	◦ 흡연, 음주 또는 약물 흡입한 경우	○					
	(2)	◦ 흡연, 음주 또는 약물을 흡입하고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3)	◦ 상습적인 흡연, 음주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4)	◦ 음주를 하고 등교한 경우	○	○	○			
	(5)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			○	○	○	○
<b>다. 퇴폐 행위</b>	(1)	◦ 학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한 경우	○	○	○			
	(2)	◦ 도박행위를 한 경우	○	○	○			
	(3)	◦ 남녀 혼숙 또는 남녀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4)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	○	○	○	○
	(5)	◦ 범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b>라. 금품</b>	(1)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 갈취한 경우	○	○	○			
	(2)	◦ 금품을 절취한 경우	○	○	○			
	(3)	◦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				○	○	○
	(4)	◦ 기타 유사한 사행 행위를 한 경우	○	○	○			
<b>마. 집단 행위</b>	(1)	◦ 불법집회에 참석한 경우	○	○				
	(2)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3)	◦ 불량서클에 가입하였거나 참석한 경우	○	○	○			
	(4)	◦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5)	◦ 집단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경우	○	○	○	○	○	○
	(6)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	○	○	○	○
<b>바. 예절</b>	(1)	◦ 언행이 불손한 경우	○					
	(2)	◦ 성행이 불량하여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경우	○	○				
<b>사. 수업</b>	(1)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 한 경우	○					
	(2)	◦ 고의로 수업을 거부한 경우	○	○	○			
	(3)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도와준 경우	○	○	○			
	(4)	◦ 시험을 거부한 경우	○	○	○			
	(5)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	○	○	○	○
	(6)	◦ 시험문제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경우	○	○	○	○	○	○
<b>아. 준법</b>	(1)	◦ 공중도덕을 위반 및 학교 단체 행사에 고의로 불참	○					
	(2)	◦ 교사에게 불손한 말과 행동을 한 학생 및 지도에 불응한 경우	○	○	○	○	○	○
	(3)	◦ 학생선도 기간 중 지도에 불응한 경우	○	○	○	○	○	○
	(4)	◦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 또는 구속된 경우	○	○	○			
	(5)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경우	○	○	○			
	(6)	◦ 과장된 내용을 통신매체에 기재 또는 유포한 경우	○	○	○			
	(7)	◦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행위	○	○	○	○	○	○

	(8)	◦ 절도 행위	○	○	○	○	○
	(9)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경우	○	○	○		
	(10)	◦ 오토바이 운전(탑승), 차량을 운전하여 등하교 하는 경우	○	○			
	(11)	◦ 거짓 진술 및 거짓 진술을 사주한 경우	○	○	○		
	(12)	◦ 허위 신고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13)	◦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될 물품(휴기 등)을 소지한 경우	○				
	(14)	◦ 불량서클에 가담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15)	◦ 교구, 공공시설이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경우	○	○	○		
	(16)	◦ 11조4항에 의거 휴대전화 수거 시 미제출로 적발된 경우 (1회 : 담임지도, 2회 : 학부모 내교, 3회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	○	○	
자. 체험 학습	(1)	◦ 프로그램 진행 시 지시 불이행 및 소란을 피운 경우	○	○	○	○	○
	(2)	◦ 흡연(도구소지 및 전자담배와 관련물품포함), 음주, 불법취사 등을 한 경우	○	○	○	○	○
	(3)	◦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취침방해, 쓰레기 투기, 욕설, 자연훼손 등)	○	○	○		
	(4)	◦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한 경우	○	○	○	○	
	(5)	◦ 기타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차. 기타	(1)	◦ 사건의 반복으로 2회 이상 선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2)	◦ 선도 기준의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선도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선도처분 수위는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유형이 없을 시에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54조 【흡연학생 지도(전자담배, 비타스틱 포함)】

- ① 흡연학생이라 함은 담배의 소지, 라이터의 소지 등 흡연과 관련된 물품 및 유사기구를 소지한 학생을 총칭하며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흡연 물을 소지하면 흡연으로 간주한다.
- ② 흡연여부는 후각검사 등으로 실시하되, 적발 후 흡연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흡연검사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③ 적발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도를 통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55조 【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56조 【퇴학학생의 지도】 퇴학학생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만 적용한다.)

- ① 학생을 선도 처분 및 퇴학 조치한 때에는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등을 통해 진로지도를 충실히 한다.
-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을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 【상담지도】 선도대상 학생은 상담을 통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상담교사 부재 시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 선정하여 운영함.)

**제58조 【학부모지도】** 선도 처리 시 선도 사항을 명시하고 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망한다.(단, 3회 통고하여 내교하지 않을 시는 학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9조 【선도 처분 해제】** 선도 처분 해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선도 처분의 해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 및 업무담당부장 교사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선도 처분 해제 학생은 담임교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개별 지도를 철저히 한다.
- ③ 흡연(전자담배 포함) 관련으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금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선도 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제60조 【학생선도의 가중 및 경감】**

- ① 학교생활 중 일어난 학생사안은 누가기록하며 이후 교내봉사 이상의 사안 발생 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 ② 선도 사안 발생 후 생활태도(수업태도 등)와 반성의 정도를 해당 교사(학급 및 교과 담임 등)의 견 수렴과정을 거쳐 선도 처분 수위의 경감, 가중 또는 상위 단계의 선도 처분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1조 【선도 처분 내용 통보】** 선도 처분이 확정되면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보호자에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선도 처분의 효력】** 선도 처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 ① 표창에서의 제외는 제49조에 따른다.
- ② 학생회 임원으로 동일학년에서 사회봉사 이상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63조 【선도처리 중 재위반자 처리】**

- ① 선도 처분 기간 중 재 위반 시는 차 상위 단계의 선도 처분에 처한다.
- ②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처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 【재심요구】**

- ①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1)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 ② 재심의 여부 결정
  - 1)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의
  - 1)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 2)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 ④ 학교장 조치
  - 1)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2)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3) 조치 이행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① 재심청구

- 1) 선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2)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둘 중 먼저 도래한 기한까지 청구 마감)
- 3)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한다.
- 4) 재심 청구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나) 피청구인
  - 다)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라)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② 재심

- 1)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2) 해당 학교는 3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 3)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4)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할 수 있다.
- 5)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된다.
- 6)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후 절차

- 1) 재심결정
-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 3) 시행

**[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

-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2)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

-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가) 학생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학교장은 재심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 제1절 총칙

**제65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66조 【책무】

-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장애학생의 인권

#### 제6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8조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 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제70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절 인권교육**

#### **제71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 **제6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개정 절차에 따른 규정**

**제72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선도 처분, 선도 외의 지도방법,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75조 【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구성은 학생 3, 교원 3, 학부모 2,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교직원 수와 학생 수가 동일하도록 선출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6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의결서는 해당 구성원의 30%가 동의하고, 대표(대의원회)기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할 경우 해당할 경우 인정한다.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7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8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9조 【공포 및 정보 공시】**

-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80조 【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7장 학업중단 예방**

**제82조 【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학생자치회와 관련된 규정은 [붙임1]과 같이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학생자치회와 관련된 규정은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개정 2023.4.14.

개정 2023.12.1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선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선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2023.4.14. 개정>

##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4 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4.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 5 조 【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 6 조 【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⑧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7 조 【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1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 8 조 【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의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함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⑧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⑨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3.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4.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금지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장난감 칼 등	3일 이내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li>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분리 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⑪ 교원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 제8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⑫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

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 9 조 【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조 따른 조인, 제8조에 따른 상담, 제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 **제 10 조 【보상】**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 11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12 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13 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2023.4.14. 개정>

**제16조(구성)**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9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간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업무 담당자 혹은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2023.4.14. 개정>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학생의 선도

**제22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제23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25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다.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2023.4.6. 개정>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⑤ 퇴학
  1. 퇴학조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나.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한 자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퇴학처분 전 조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와 같다.<2023.4.14. 개정>

구 분	항	내 용	학생 선도 기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가. 근태	(1)	◦ 미인정결석.미인정지각.미인정조퇴.미인정결과 ◦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지도함					
	(2)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미인정결석 일수가 10일에 도달한 경우	○				
	(3)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미인정결석 일수가 16일에 도달한 경우		○			
	(4)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미인정결석 일수가 21일에 도달한 경우			○		
	(5)	(1)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산 미인정결석 일수가 26일에 도달한 경우				○	
나. 약물	(1)	◦ 흡연.음주 또는 약물 흡입한 경우	○				
	(2)	◦ 흡연.음주 또는 약물을 흡입하고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3)	◦ 상습적인 흡연 음주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4)	◦ 음주를 하고 등교한 경우	○	○	○		
	(5)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		○	○	○	○
다. 퇴폐 행위	(1)	◦ 학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한 경우	○	○	○		
	(2)	◦ 도박행위를 한 경우	○	○	○		
	(3)	◦ 남녀 혼숙 또는 남녀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4)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	○	○	○
	(5)	◦ 범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라. 금품	(1)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 갈취한 경우	○	○	○		
	(2)	◦ 금품을 절취한 경우	○	○	○		
	(3)	◦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		○	○	○	○
	(4)	◦ 기타 유사한 사행 행위를 한 경우	○	○	○		
마. 집단 행위	(1)	◦ 불법집회에 참석한 경우	○	○			
	(2)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3)	◦ 불량서클에 가입하였거나 참석한 경우	○	○	○		
	(4)	◦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5)	◦ 집단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경우	○	○	○	○	○
	(6)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	○	○	○
바. 예절	(1)	◦ 언행이 불손한 경우	○				
	(2)	◦ 성행이 불량하여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경우	○	○			
사. 수업	(1)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 한 경우	○				
	(2)	◦ 고의로 수업을 거부한 경우	○	○	○		
	(3)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도와준 경우	○	○	○		
	(4)	◦ 시험을 거부한 경우	○	○	○		
	(5)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	○	○	○
	(6)	◦ 시험문제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경우	○	○	○	○	○
아.	(1)	◦ 공중도덕을 위반 및 학교 단체 행사에 고의로 불참	○				

준법	(2)	◦ 교사에게 불손한 말과 행동을 한 학생 및 지도에 불응한 경우	○	○	○	○	○
	(3)	◦ 학생선도 기간 중 지도에 불응한 경우	○	○	○	○	○
	(4)	◦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 또는 구속된 경우	○	○	○		
	(5)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경우	○	○	○		
	(6)	◦ 과장된 내용을 통신매체에 기재 또는 유포한 경우	○	○	○		
	(7)	◦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행위	○	○	○	○	○
	(8)	◦ 절도 행위	○	○	○	○	○
	(9)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경우	○	○	○		
	(10)	◦ 오토바이 운전(탑승), 차량을 운전하여 등하교 하는 경우	○	○			
	(11)	◦ 거짓 진술 및 거짓 진술을 사주한 경우	○	○	○		
	(12)	◦ 허위 신고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13)	◦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될 물품(흥기 등)을 소지한 경우	○				
	(14)	◦ 불량서클에 가담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15)	◦ 교구, 공공시설이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경우	○	○	○		
	(16)	◦ 11조4항에 의거 휴대전화 수거 시 미제출로 적발된 경우 (1회 : 담임지도, 2회 : 학부모 내교, 3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	○	○	
	자. 체험 학습	(1)	◦ 프로그램 진행 시 지시 불이행 및 소란을 피운 경우	○	○	○	○
(2)		◦ 흡연(도구소지 및 전자담배와 관련물품포함), 음주, 불법취사 등을 한 경우	○	○	○	○	○
(3)		◦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취침방해, 쓰레기 투기, 욕설, 자연훼손 등)	○	○	○		
(4)		◦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한 경우	○	○	○	○	
(5)		◦ 기타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차. 기타	(1)	◦ 사건의 반복으로 2회 이상 선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2)	◦ 선도 기준의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26조 (정치적 참여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만 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및 선거 운동 등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 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8조(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선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선도 조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도조치를 유보한다.

#### 제29조(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31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 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학생에게 선도처분을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심의절차 및 조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33조(선도 내용의 통지)**

-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교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5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6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단계별 활용 서식

1. 학생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

23-○차				
단계	체크 사항	체크 항목	체크 결과	서식
사안 발생	사실 확인	사건 정황·경위 파악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	
	학생 지도	1차 면담 및 생활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 <input type="checkbox"/> 지도일[ ]	
	사안 접수	신고내용 '사안접수대장' 기록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 <input type="checkbox"/> 보고일[ ]	[서식6]사안접수대장
	사안 보고		학교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기록자[ ] <input type="checkbox"/> 기록일[ ]	
사안 조사	관련자 조사	사실 확인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	[서식2]학생자기변론서 [서식3]목격자확인서 [서식4]사실확인서
	입증 자료 수집	물증·증거 수집	<input type="checkbox"/> 여[ ] <input type="checkbox"/> 부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작성자[ ] <input type="checkbox"/> 보고일[ ]	[서식5]사안조사보고서
	조사 결과 통지		학교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 <input type="checkbox"/> 보고일[ ]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상정 여부	상정 여부 협의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결정	<input type="checkbox"/> 상정 <input type="checkbox"/> 미상정	
		징계 이외 지도방안(미상정시)	<input type="checkbox"/> 지도방안[ ]	
여부 결정	학교장 재가	학교장의 상정 여부 결정(내부기안)	<input type="checkbox"/> 상정 <input type="checkbox"/> 미상정	내부기안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생활교육위원회	계획 수립	위원 협의 및 학부모(보호자) 참여 가능, 일시·장소 선정	<input type="checkbox"/> 수립	
	개최 안내·통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내부기안	<input type="checkbox"/> 기안자[ ] <input type="checkbox"/> 결재일[ ]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서식7]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서식8]서면 의견서 [서식16]수령확인서
	징계 심의	징계 조치 심의·의결	<input type="checkbox"/> 징계 <input type="checkbox"/> 없음	[서식11]징계 의결서
	개최	학교장 재가	학교장의 징계 최종 결정	<input type="checkbox"/> 재가 <input type="checkbox"/> 불허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서식15]조치 결정 통지서 [서식16]수령확인서
	불복절차 통지·안내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징계 시행	이행 계획 수립	징계 조치 이행 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수립	[서식14]이행 계획서
		학습결손 대비책 마련	<input type="checkbox"/> 여[ ] <input type="checkbox"/> 부	
	이행 계획 통지	학교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 <input type="checkbox"/> 보고일[ ]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서식14]이행 계획서
	징계 조치 시행	조치별 징계 이행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징계 이행 보고	학교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 <input type="checkbox"/> 보고일[ ]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 <input type="checkbox"/> 통지일[ ]	
불복	징계 조치 불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불복	[서식17]재심의 신청서 [서식18]재심 청구서	



2. 학생 자기변론서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 3.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4.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관련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6.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자 (기관)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육하원칙)	관련 학생·학부모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비고
생교 23-1	○○○순경 (○○경찰서)	2023.00.00. 00:00	○○○ (교사)	2023년 0월 0일 00시경 김○○, 박△△학생이 함께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자와 음료를 훔침	2023.00.00. 00:00 (유선)	2023.00.00. 00:00 (대면)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군서미래국제학교장

8. 서면의견서

## 서 면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9. 기피신청서

## 기피 신청서

\* 사안번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p>「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000학생 보호자</p> <p style="margin-right: 100px;">2000.00.00.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p>				



1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제○회 군서미래국제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성명	학년 / 반	의결 사항		
		징계내용	징계 수준	비고
김○○	○ / ○	특별교육 이수	○시간	
이○○	○ / ○	학교 내의 봉사	○시간	

위 조치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날인)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군서미래국제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제척, 기피, 회피 절차의 진행 3.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4. 사안보고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불복절차 안내 6. 참고인 진술 7. 안전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자: 간사 ○○○

1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사안 번호	학년 / 반	성명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사유	이행 여부
생교 23-1	○ / ○	○○○	학교 내의 봉사	5시간	2023.00.00. ~ 2023.00.00.	흡연	

[참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공개 문서로 관련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 보존기간(00후 0년 보존)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사안 번호	생교 23-○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사항	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대상 학생 (학년 / 반)					
○○○ (○ - ○)	징계 이행(시행) 계획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학교내의 봉사	○시간	20 .00.00.~20 .00.00., 방과후 ○시간씩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부 (교사 ○○○)
○○○ (○ - ○)	징계 이행(시행) 계획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특별교육 이수	○시간	20 .00.00., 10:00 ~ 12:00	상담	○○학교 / 위클래스 (교사 ○○○)
○○○ (○ - ○)	징계 이행(시행) 계획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출석정지	2일	20 .00.00.~20 .00.00., 시험기간 제외	과제 부여 후 가정학습 실시 (가정학습프로그램)	○○부 (교사 ○○○)
※ 징계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 단, 징계 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					

14. 조치결정 통지서

## 조치결정 통지서

군서미래국제학교생활인권규정 제00조, 제00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li> <li>◦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li> <li>◦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20조)</li> </ul>		
(담당자: ○○○, ☎ 000-000-000)			
20 . . .			
군서미래국제학교장 (직인)			

15. 수령 확인서

## 수령 확인서

서류명	
수령인 성명	
수령인 주소	
연락처	
수령 장소	
확인 내용	
<p>년      월      일</p> <p>학생명 :</p> <p>학생과의 관계 :</p> <p>성명 :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16.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 구 인	성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군서미래국제학교장 귀하								
※ 참고사항: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1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생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주 소	
보호자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관 계	

상기 본인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사회봉사 의뢰 기관 특별교육 의뢰 기관		
② 이용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 관한규칙 제3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학교, 사회봉사의뢰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등에 관련 정보 제공		
③ 제공 항목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보호자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 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서류 보유기간 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19. 사회봉사 의뢰서

##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담당교사		연 락 처	
	답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군서미래국제학교장				

20.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 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25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 사 1 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 사 2 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 사 3 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군서미래국제학교장 귀하

21. 특별교육 의뢰서

## 특별교육 의뢰서

1. 학교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긴급번호	

2. 학생/학부모 정보

학생교육 ( )			학부모교육 ( )		
의뢰기간			의뢰기간		
학생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                      ), 학생(                      )				

3. 특별교육 의뢰 사유

학교폭력	유형:                                      (조치유형 :    호)
선도조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침해	유형:                                      (조치유형 :    호)
분류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유형 :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선도조치사안 :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중 교칙위반 / 지각, 미인정결석 등 출결관련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침해유형 :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이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22.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이외의 기관 위탁 및 프로그램 참가시 변형하여 사용 가능)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23.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 본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를 위탁 받은 결과 그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담당자	
			기관연락처	
학생교육( ) 1)~3)표기 학부모교육( ) 1)~4)모두표기	1)학교명		2)학생 학년반	학년 반
	3)학생성명		4)학부모성명	
학교에서 의뢰한 기간 및 시간	학생	20 . . . ( ) ~ 20 . . . ( ) 총( )시간		
	학부모	20 . . . ( ) 00:00 ~ 00:00 총( )시간		
특별교육 의뢰사안	학교폭력 조치유형( )호 / 선도 조치유형( )호 교육활동침해 조치유형( )호 중 사유기재			
교육평가 및 참고사항				
교육 이수시간	학생	20 . . . ( ) ~ 20 . . . ( ) 총( )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우수 / 보통 / 미흡	
	학부모	20 . . . ( ) 00:00 ~ 00:00 총( )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위와 같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20    년    월    일                      기관(명)장 (직인)                 </div>				

※ 본교에서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의 특별교육이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학교확인란	20 . . . .  학교장 (직인)
-------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